

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: ‘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(DMCA)’의 ‘면책조항(Safe Harbor Protection)’ 유지를 위해 12월 31일까지 조치가 필요합니다.



글: [Brian D. Anderson](#) 및 [Rachel Tarko Hudson](#)
(2017년 10월 26일 [지적재산](#)에 게시)

미국 저작권청은 ‘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(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, DMCA)’의 면책조항 대리인 등록 절차를 변경하고 있습니다. 변경된 사항들은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대리인 등록을 한 기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.

‘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(DMCA)’ 상의 새로운 대리인 등록 시스템에 관련하여 살펴봐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?

‘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(DMCA)’의 면책조항 유지를 위한 조건을 갖추려면, 저작권청의 새로운 전자 시스템을 사용하여 DMCA 하에서 **2017년 12월 31일까지** 저작권 침해에 대해 통지를 받기 위한 대리인을 지정해야 됩니다. DMCA 면책조항으로 알려진 512 조는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그들의 웹사이트, 앱 또는 기타 온라인 서비스에 전송, 캐시, 저장, 인용 또는 연결로 인해 저작권 침해 기반이 되는 주장으로부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을 보호합니다.

대리인 등록은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?

[DMCA website](#) 에서 할 수 있습니다.

2016년 12월 1일 이전에 예전의 서면 양식을 통해 DMCA 대리인 등록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?

2017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전자 시스템을 통해 재등록해야 합니다.

그 밖의 새로운 사항은 무엇입니까?

새로운 DMCA 규정에 따르면, DMCA 대리인 등록은 더 이상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- 서비스 제공자는 매 3년마다 대리인 등록을 새로이 갱신해야만 합니다.

변경되는 사항에 관련하여 우려할 필요가 있습니까?

예, 다음과 같은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:

1. 2016년 12월 1일 이전에 예전의 서면 양식을 통해 DMCA 대리인 등록을 했을 경우;
2.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약관에 DMCA take-down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; 및/또는
3. 사용자가 텍스트, 사진, 비디오, 오디오 등을 게시하거나 업로드할 수 있게 허락한 웹사이트를 포함하여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귀하의 온라인 서비스가 저장, 전송, 캐시, 인용 또는 연결하는 경우. 만약 사용자가 귀하의 웹 사이트, 앱 또는 기타 온라인 서비스에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경우 DMCA 하에서 귀하는 “온라인 서비스 제공자”이며 DMCA 면책조항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.

서비스 약관 변경이 필요합니까?

특히 지난 2-3년 내에 변경하지 않은 경우, 귀하의 서비스 약관을 검토하고 갱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